

■ 경륜·경정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0. 8. 11.>

환급금 산출방식(제19조 관련)

1. 각 승자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 총액

승자투표권 발매금액 $\times\{1-(\text{승자투표권 발매이익률}+\text{승자투표권 발매과세율})\}$

2. 연승식 승자투표방법에서의 각 승자별 환급금 총액

가.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: 환급금 총액의 2분의 1

나. 첫 번째, 두 번째 및 세 번째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: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